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26 선고 2021가단110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08,649,8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649,8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최보원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경위

1) B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였던 자로, 2018. 4. 20. F, G와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8. 6. 5. 잔금 1,295,000,000원 수령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8. 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85,347,05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징수결정내역 화면 사본 참조).

2) B는 2019. 5. 2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2,022,82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징수결정내역 화면 사본 참조).

3) B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표1>과 같이 가산금 20,147,82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등 108,649,8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화면 사본 참조).

< 표1. B의 2021. 6. 2. 현재 국세체납액 >

세 목	귀 속	관할관서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18년	안산	2018. 12. 31.	85,347,050	106,470,360
종합소득세	2018년	안산	2019. 9. 10.	1,847,100	2,179,510
합 계				87,194,150	108,649,870

나. B의 부동산 처분 및 현금증여 경위

1) B는 2018. 4. 20. 양수인 F, G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1,4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받아 아래와 같이 인출하였습니다(갑 제 3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참조).

<표 2. B의 양도대금 소비내역>

양도대금 수취내역			양도대금 인출내역			
일자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예금주	비고
18. 4. 20.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75,000,000				
18. 4. 23.			I (계좌번호 2 생략)	60,000,000	B	증여관련*
				7,000,000	B	현금인출
18. 4. 25.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20,000,000	I (계좌번호 2 생략)	100,000,000	B	증여관련*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23,000,000	B	
				5,000,000		
18. 6. 5.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140,000,000	H조합 (계좌번호 4 생략)	101,667,192	B	채무상환
			H조합 (계좌번호 5 생략)	640,503,312	B	채무상환
	임대보증금 승계	100,000,000				
18. 6. 7.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322,712,905	B	증여관련*
			K조합 (계좌번호 6 생략)	75,000,000	B	현금인출
합계		1,435,000,000		1,322,883,409		

* 양도대금 중 증여 관련 금액은 굵은 글씨로 표기

B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우회하여 2018. 11. 1 A에게 210,350,480원 지급

2) B는 2018. 4. 20. 상기 부동산 매매에 따른 계약금 80,000,000원 중 75,000,000원을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후 2018. 4. 23. 60,000,000원을 본인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고, 7,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됩니다(갑 제3호증의 1 입출금거래내역 참조).

3) B는 2018. 4. 25. 추가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취한 후 같은 날 100,000,000원은 본인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고, 23,000,000원을 본인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였으며, 5,000,000원은 현금인출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입출금거래내역 참조).

4) B는 2018. 6. 5. 잔금 1,140,000,000원을 매수인 F으로부터 본인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상기 양도부동산에 설정된 본인의 H조합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본인의 H조합 대출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101,667,192원을, 본인의 H조합 대출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640,503,312원을 입금하여 채무액 740,000,000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참조).

5) B는 2018. 6. 7. 잔금 1,140,000,000에 대하여 대출 상환액 740,000,000원을 제외한 399,496,688원 중 322,712,905원을 본인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였고 75,000,000원을 본인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으로 입금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참조).

6) 2018. 6. 7. B는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322,712,905원 중 320,000,000원을 수표발행하여 150,000,000원을 2018. 6. 12. 본인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수표 발행한 100,000,000원 또한 2018. 6. 15. 본인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참조)

7) 2018. 6. 7. B는 부동산 양도 후 수령한 잔금 1,140,000,000원 중 75,000,000원을 본인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하였습니다. 2018. 6. 5. 입금 받은 55,000,000원을 포함하여 2018. 6. 7. 동 계좌의 잔액은 130,013,754원이었습니다. B는 이후 2018. 6. 10.부터 2018. 8. 16.까지 총 81,000,000원을 CD기를 통해 현금인출 하였고, 나머지는 국세 84,337,030원의 납부에 사용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참조)

8) 2018. 11. 1. B는 본인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18. 4. 23. 부터 2018. 6. 12. 까지 매도자금 410,000,000원을 입금하여 운용하던 중 2018. 11. 1. 배우자 A의 I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210,350,48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갑 제10호증의 2 참조)

다.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B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갑 11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 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은 2018. 6. 30. 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11. 1. 당시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B가 2018. 8.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금액 168,670,070원 중 분납할 세액 84,335,035원을 2018. 10. 31. B가 납부하지 않자, 원고가 2018. 12. 10.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B의 부동산임대수익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8. 11. 1.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B가 2019. 5. 23.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9. 8. 1.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종합소득세가 확정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항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B는 A에게 210,350,480원을 증여하여 해당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이 사건 사해행위일 2018. 11. 1.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증여액 210,350,480원을 포함하여 합계 218,327,161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87,194,150원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나 B가 양도대금의 일부인 322,712,905원을 본인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수표 발행한 금액 중 일부인 250,000,000원을 본인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운용하던 중, 2018. 11. 1. 배우자 A의 계좌에 210,350,480원을 입금하여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야기되어 무자력이 되었습니다.

〈표3〉 2018. 11. 1. 사해행위 당시 B의 채무초과 여부

	종류	내역	가액(원)	입증자료
적극재산	예금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19,040	갑 제 3호증의 4
적극재산	예금	I계좌(계좌번호 2 생략)	210,350,480	갑 제10호증의 2
적극재산	예금	K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	126,060	갑 제10호증의 1
적극재산	예금	H계좌(계좌번호 1 생략)	4,600	갑 제 3호증의 1
적극재산	예금	L조합계좌(계좌번호 8 생략)	40,535	갑 제10호증의 3
적극재산	예금	L조합계좌(계좌번호 9 생략)	6,139	갑 제10호증의 4
적극재산	예금	M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	10,307	갑 제10호증의 5
적극재산	상장주식	(주) N 6,000주	7,770,000	갑 제10호증의 2, 갑12호증
소계(①)			218,327,161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87,194,150	
소계(②)			87,194,150	
사해행위 당시 순 자산③(①-②)			131,133,011	
사해행위 현금증여(④)			210,350,480	
채무초과(③-④)			△79,217,469	

다. 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B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향후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이 고지될 것임에도 피고와 증여계약을 함으

로써 추가적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B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B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금액은 210,350,48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108,649,87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108,649,8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